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공매재산 낙찰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매재산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 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결정 기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92조제2항 신설).
-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채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여지가 없는 등의 사유로 채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는 경우 종전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사실을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고 없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도록 하여 채납처분 중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함(안 제104조제3항).

II. 검토의견

1. 국세징수법과 상이하게 규정된 매각결정 기일 연기 규정 정비 필요(안 제92조제2항 단서 및 부칙 제2조)

- 안 제92조제2항 본문은 공매재산 낙찰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매재산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예를 들면 농지 소유를 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 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항 단서는 ‘낙찰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갖추기 때까지’ 추가로 매각결정 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국세징수법」 제84조제2항의 경우 안 제92조제2항 본문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단서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 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공매는 공공기관이 강제적으로 하는 매매 방식(채납처분절차의 최종단계로서 압류재산을 강제적으로 처분)으로서 ‘낙찰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라고 하더라도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기 때까지 매각결정 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공매절차의 신속한 진행이라는 공익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또한, 안 부칙 제2조(매각결정 기일의 연기에 관한 적용례)는 해당 매각결정 기일 연기에 관한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당시 아직 매각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세징수법」 제78조제2항¹⁾에 따라 공매공고를 할 때에는

1) 「지방세징수법」 제78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공매·재공매 등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1.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2.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3. 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기간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기간)

‘매각결정 기일’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를 하여야 하므로, 입찰자의 신뢰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세징수법」 개정 당시(법률 제19927호, 2023. 12. 31. 일부개정)에도 관련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음.

- 이에 「국세징수법」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안 제92조제2항 단서는 삭제하고, 제9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안 부칙 제2조의 적용례를 수정하는 수정의견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마련함.

<국세징수법과 비교 및 수정의견>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개 정 안	수정의견
제84조(매각결정 및 대금납부기한 등) ② 관할 세무서장은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	제92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낙찰자가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	제92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낙찰자가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

4. 개찰(開札)의 장소와 일시
5. 공매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
6.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채납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
7. 배분요구의 종기(終期)
8.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9. 매각결정 기일
10. 매각으로도 소멸하지 아니하는 공매재산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 그 사실
11. 공매재산의 매수인에게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경우 그 사실
12. 제8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내용 및 기간
13. 제90조에 따른 차순위 매수신고의 기간과 절차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개 정 안	수정의견
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결정기일 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부 칙 <법률 제19927호, 2023. 12. 31.> 제4조(매각결정기일의 연기 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 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 결정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결정 기 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다 만, 낙찰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갖출 때까지 추가로 매각결정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부 칙 제2조(매각결정 기일의 연기 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 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매각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 한다.	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 결정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결정 기 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단서 삭제> 부 칙 제2조(매각결정 기일의 연기 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 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전문위원 김 성 완)